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65

발의연월일: 2021. 8. 2.

발 의 자: 김석기 · 정진석 · 서병수

金炳旭・태영호・김선교

김형동 · 서정숙 · 정희용

지성호 · 이철규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사회적 제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합리적으로 보상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문화재 보호구역의 주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등에 따라 세제지원 등을 받고 있는 반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행위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고 세제지원 등의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 실정임.

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4호 신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복리증진사업
- 2.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 3.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 4. 그 밖에 시 · 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③ 시·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지원대상·기준, 의견수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 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리증진사업 2.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3.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기반시설 개선사업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에 연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의견을 반영하여야한다. ④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제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②・③ (생 략)

<u>의</u> 수	립・시	행 절	차,	지원다	<u> </u>
• 기급	<u> </u>	수렴적	설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	- 렁렁	으로	정
<u>한다.</u>					
]51조(.	보조금)	1 -			

~ 3. (현행과 같음)
 4.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③ (현행과 같음)